

2. 플랜카드 3. 지역신문, 홍보전단지 4. 매스컴 (지역신문이나 방송) 5. 관계기관 연계 협력 및 시설 방문자 등의 관리 등 6. 기타 홍보(SNS, 구두홍보 등)

제111조 (반입물품)

- ①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사진등의 개인물품 및 의류를 반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가구나 타인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제한할 수 있다.
- ② 귀중품이나 금품은 요양원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12조 (계약목적)

-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요양원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13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1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1. 식재료비 (1식3,800원,간식비1,500원,1일12,900), 경관식비15,000원(1일), 수급권자는 무료
 - 2.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이용 비용) - 2025년 수가표

등급별 급여내용	1등급 (72,480원/일)	2등급 (67,250원/일)	3등급 (4,5등급포함) (62,000원/일)	등급외자
자부담(20%)	14,496원/일	13,450원/일	12,400원/일	전액 자부담 60,000(1일)
비급여(식비,간식비)	12,900원/일	비급여(특실비)	10,000원/일	
자부담 합계 (30일 기준)	821,880원	790,500원	759,000원	

제115조 (비용수납)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6조 (신원인수인)

-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요양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요양원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18조 (시설의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9조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안내 혹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비용을 변경 하도록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④ 전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0조 (서비스의 원칙) 요양원의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1조 (서비스의 내용)

-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내용을 실시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② 요양원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2025년 사랑채요양원 수가표(공생)

1. 등급별 수가 비교표

시행일 : 2025. 01. 01

구분	일일단가 (공단+본인)	일	합계	일반		40%경감		60%경감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공단부담금 (88%)	본인부담금 (12%)	공단부담금 (92%)	본인부담금 (8%)
1등급	72,480	30	2,174,400	1,739,520	434,880	1,913,472	260,928	2,000,448	173,952
		31	2,246,880	1,797,504	449,376	1,977,254	269,626	2,067,130	179,750
2등급	67,250	30	2,017,500	1,614,000	403,500	1,775,400	242,100	1,856,100	161,400
		31	2,084,750	1,667,800	416,950	1,834,580	250,170	1,917,970	166,780
3~5등급	62,000	30	1,860,000	1,488,000	372,000	1,636,800	223,200	1,711,200	148,800
		31	1,922,000	1,537,600	384,400	1,691,360	230,640	1,768,240	153,760

2. 비급여 항목

구분	세부내용			일	금액
식대+간식 특실비/등급외	식대:3,800*3= 11,400 / 간식:1,500(1회) 특실비용:10,000(1일) / 등급외 일일이용료 60,000원			30	387,000
	5,000*3=15,000 (30일: 450,000 / 31일: 465,000)			31	399,900
경관식 / 이미용	이미용			7000	

3. 개인부담금(본인부담금+식비)

구분	일일단가 (공단+본인)	일	일반		비고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8%)	
1등급	72,480	30	821,880	560,952	진료비별도
		31	849,276	579,650	진료비별도
2등급	67,250	30	790,500	548,400	진료비별도
		31	816,850	566,680	진료비별도
3~5등급	62,000	30	759,000	535,800	진료비별도
		31	784,300	553,660	진료비별도